연말정산 및 급여담당자를 위한 HIT THE SPOT SERIES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관련 안내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9.12.10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최근 국세청에서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식에 대한 변경 및 기준 제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최근 변경사항등과 업무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 변경에 따른 안내사항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은 언제 제출하여야 하는지?

·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2020.01.31일까지 입니다.
▶ 반기의 다음달 말일로 제출기한이 변경됨.
상반기(1월~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준 변경(귀속기준→지급기준)에 따른 국세청 안내사항

상반기에 6월 귀속을 7월에 지급한 부분도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 귀속기준에서 지급기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반기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하반기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한다.

2019년 12월 급여를 2020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 여부

· 12월분 급여를 근무한 연도가 지나 2020.01월 이후에 지급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2019년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와 20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 12월 연장근로수당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19년 귀속 성과상여금을 20년 1월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담당부서 관점은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고자 소득을 파악 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므로 상·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상의 합계금액과 다음연도 3월 10일에 제출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서, 회사가 제출한 상·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3월 10일에 제출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을 추후정산 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입니다.

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변경에 따른 안내사항

상반기에는 과세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구분기재 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급여 등과 인정상여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었는데 어떤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의 여부

· 상반기에는 과세소득(인정상여를 제외한 총급여액)과 비과세소득을 구분기재하였으나, 하반기 제출분부터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정상여를 포함한 총급여액)만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⑲ 급여 등"은 인정상여를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재하면 되며, "⑳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말합니다.

※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4 기타

퇴사 후 재입사한 직원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 기재방법은?

· A직원이 2019년 9월 30일에 퇴사하였다가 2019년 11월 1일에 재입사하여 계속근로 중인 경우 각각의 근로기간별로 나누어 기재합니다. - A직원 2019. 07. 01. ~ 09. 30. 0000 원 - A직원 2019. 11. 01. ~ 12. 31. 0000 원

다른 회사에 근무하다 하반기에 우리회사로 이직한 직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기재방법은?

· 간이지급명세서는 주(현)근무지(우리회사)에서 지급한 내역만 제출하며, 종(전)근무지에서 지급한 내역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